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22.05.04.
개정 2025.08.21.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 5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수수료”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 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3. “성과수수료”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일)에 계약 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4. “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5. “집합투자업”이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과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 받는 금전
 - 나. 판매회사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다.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마.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

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사.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일회적으로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 아.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 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65조(성과보수의 제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제5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⑧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구간에는 수수료 • 보수 수준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투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전환 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시기, 금액 등의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 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이하 “선취”라 한다)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회사는 수수료 지급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 성과수수료 계산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6.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1 항 및 동시행령 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회사는 법 제 58 조 1 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조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인 2022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